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하는 마을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시·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II. 검토의견

1. ‘마을’의 공간적 범위의 한계 설정(안 제2조제2호)

- 안 제2조제2호는 ‘마을주민’을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마을주민의 범위를 ‘시·군·구’의 주민까지 해당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런데, 안 제2조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는 표현에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마을주민’은 광역자치단체의 주민까지 해당하게 됨.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마을’의 정의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임에 따라 농어촌 관련 다수의 법률¹⁾에서 ‘마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²⁾에서는 ‘마을’을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³⁾로 규정

1)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산업법’ 등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하고 있으므로, ‘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법 체계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마을주민’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u>지방자치단체의</u>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2.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 안 제13조제1항은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근거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의 지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기업에게 지정 취소는 불이익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⁴⁾할 것으로 보임
 므로, 안 제13조제2항에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의무화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3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1. ----- -----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 -----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 -----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해산 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등과 같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714.

3. 시정명령 요건의 구체화(안 제19조)

- 안 제19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필요하면 마을기업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안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되며, 안 제2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⁵⁾.
- 시정명령은 마을기업에게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명확성의 원칙⁶⁾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안 제19조제3항은 보고·검사 결과 어떠한 내용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필요하면’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통해 행정청에게 재량을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유사입법⁷⁾을 참고하여 보고·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5) 안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침익적 행정처분 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근거조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명확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함.’,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26.

7) 「산림재난방지법」 제65조(지도·감독)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9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감독)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필요하면 <u>마을기업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제19조(감독)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

4.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완(부칙 제2조)

-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경우 지정되고 있고 다수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지정된 마을기업이 기득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의 마을기업 지정 근거와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는 지정 근거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종전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일정한 기간내에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칙 제2조 단서에 1년 이내에 마을기업들이 개정안 제11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부칙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 ----- . 다만,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그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